



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

우리협회는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.

● 한국LPG가스공업협회 ●

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2(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)

○현행 내용

- LPG20kg 및 50kg용기의 경우 15년미만은 3년마다, 15년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,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함
- 내용적 50ℓ 미만(20kg)인 LPG용접용기의 신규검사후 최초의 재검사 주기는 4년임

○협회 의견 : 용기재검사기간 연장

용기 제조기술 향상 및 KOLAS인증에 따

른 용기재검사기준 강화로 LPG용기의 품질이 좋아졌으며, 잦은 재검사 및 용기팽창시험 의무화 등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LPG용기의 재검사기한 연장 필요

- 건의내용

- LPG 20kg 및 50kg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15년미만은 4년, 15년이상 20년미만은 3년, 20년이상은 2년으로 연장
- 20kg LPG용기의 신규검사후 최초의 재검사 주기는 5년으로 연장

※참 고

일본의 경우 : 20년미만은 5년마다,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

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6(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)

○현행 내용 및 문제점

- LPG판매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조항은 있으나,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을 위한 조항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

- 즉, LPG충전사업자 자율검사의 경우 공인검사기관이나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나,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관련조항이 없어 충전사업자의 자율검사 대행은 현재 가스안전공사만 실시하고 있음

○협회 의견 :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조항 신설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【별표 36】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2.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			【별표 36】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2.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			
검사구분	기술인력	검사장비	검사구분	기술인력	검사장비	
○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	○현행과 같음	○현행과 같음	○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·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	○현행과 같음	○현행과 같음	